

'87, '88 標準生計費의 算定과 몇 가지 問題點

曹 尤 鉉*

.....<目 次>.....	
I. 머리말	
II. 實態生計費와 理論生計費	
III. 標準生計費의 算定方法	
IV. 標準生計費算定에 關한 몇 가지 問題點	
V. 맺음말	

I. 머리말

「最低賃金法」제 4 조에는 최저임금의 決定基準으로 勞動者의 生計費와 類似勞動者의 賃金 및 勞動生產性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수준결정과 관련하여 日本人事院의 方법¹⁾을 적용한 標準生計費模型을 개발하여 1987년 최저임금수준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1988년에도 5월~7월 간에 6차례 걸쳐서, 학계 3명, 勞使團體 각각 4명, 관계기관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생계비 실무회의가 열려 87년에 개발된 표준생계비모형을 수정·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87년과는 조금 다른 모형에 의해 標準生計費가 계측되었다. 또한 종전의 방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

이 論文에서는 88년의 標準生計費計測方法을 보이고 87년의 그것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2년간에 걸친 標準生計費算定方法에 있어서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生計費의 여러 算出方法을 Ⅱ節에서 검토할 것이다. 왜냐하면 표준생계비 산정방법의 설명에 앞서 여타의 生計費計測方法을 설명하는 것이 서론으로서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 崇實大學校 經濟學科

1) 日本人事院內部資料, 「生計費에 關하여」.

II. 實態生計費와 理論生計費

노동자의 生活水準을 나타내는 생계비는 實態生計費와 理論生計費로 구분할 수 있다. 실태생계비는 個人이나 家計가 일정한 所得을 가지고 어떠한 消費支出을 하였는가를 실제로 조사하여 계산된 消費支出額이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2인 이상의 일반도시가구에 대해서는 家口別 平均支出額과 品目別로 家口別 平均支出額을, 그리고 2인 이상의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매년 조사하여 통계를 내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87년과 88년에 미혼 단신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단신근로자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1988년 6월에 발표하였다. 반면에 理論生計費는 바람직한 生活水準을 理論的으로 設定하여 놓고 그러한 生活에 必要한 飲食品費,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費 등을 산출하여 합계한 生計費이다.

이론생계비는 最低生計費와 標準生計費로 구분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인간의 最低生活을 보장하는 생계비이다. 이때 인간의 최저생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인간의 최저생활의 내용이 生存을 維持하는 최저생활인지 아니면 一定한 社會文化的 條件에서 인간다운 生活을 할 수 있는 최저생활인지가 1차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며, 만약에 후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가 2차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최저생활의 내용은 각국의 經濟發展段階에 따라서, 동일한 발전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는 지역의 歷史的, 文化的 條件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산출방식은 全物量方式이라고 불리우는 라운트리(Rowntree)方式, 半物量方式이라고 불리우는 앵겔(Engel)方式, 실태생계비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알렌-보울리(Allen-Bowley) 方式 등이 있다.

전물량방식은 勞動科學과 生活科學의 이론을 기초로 最低生存水準의 維持에 필요한 각 世代別 支出品目과 所要量을 정하고 이에 市場價格을 곱하여 그 합계를 구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통계학자 라운트리가 고안한 방식에 유래하며 「마켓·巴斯켓」方式이라고 하기도 한다.

라운트리는 食料品費를 영양학자가 작성한 營養表를 사용하여 성년노동자(남자)가 肉體勞動을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營養量을 평가한 뒤, 음식물종류를 선정하고 음식물량을 결정한 뒤, 家計調查에 나타난 가격을 이용·추정하였고, 住居費는 실제조사결과에 기초하여 家口員別 最低生活水準의 집세를 추산하였고, 기타 피복비, 광열비, 잠비 등의 산출은 노동자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추산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한국노총의 최저생계비 산출모형과 서울대經濟研究所의 「最低賃金 適用對象 都市勤勞者 最低生計費算出模型 開發研究」²⁾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운트리방식을 택하였다. 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산정은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고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품목을 구입할 노동소득수준, 즉 絶對貧困水準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품목과 수량선정이 작성자의 主觀的 判斷에 따라 좌우되기 쉽고 일정한 품목에 해당하는 가격의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상당한 주관적 요소가 게재되기 쉬우며 특히 일정기간후에 모형 자체를 수정해 주지 않으면 一般所得水準向上 또는 價格變動에 따른 消費構造變化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다는 단점들을 갖고 있다.

半物量方式은 각 가구별 식료품비만을 마켓·巴斯켓方式으로 계산한 후, 실제조사를 통해 나타난 總生計費中 食料品의 比率(엥겔係數)을 각 가구별로 구하여, 이 엥겔계수의 역수를 마켓·巴斯켓방식으로 구한 식료품비로 곱함으로써 각 가구별 생계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엥겔係數가 통계적으로 安定性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켓·巴斯켓방식에 의한 理論的인 食料品費에 대응하는 家計生計費를 豫測하는 것이다. 음식품비는 비교적 客觀的, 科學的 基準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엥겔계수만 안정적이라면 전물량방식이 갖는 단점 즉 생활의 모든 품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난점을 우회하면서 이론생계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식료품의 품목, 수량, 가격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생계비수준 계산자체가 잘못 계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알렌·보울리」方式은 생계비중 아무리 저급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소비품목과 그렇지 않은 사치스런 품목으로 나누고 사치스런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零이 되는 소득수준을 1차적으로 구한다. 그리고 각 품목별 消費支出과 所得水準間의 직선적(linear) 관계를 설정하고 家計調查統計를 이용하여 직선적 관계를 추정한 후, 사치스런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零이 되는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品目別消費支出水準을 추정하고 이를 합산함으로써 最低生計費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실태생계비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현실의 생활수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치스런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零이 되는 소득수준을 구할 때 사치스런 품목의 기준에 대한 애매성과 품목별 소비지출과 소득간에 설정한 직선관계의妥當性與否가 해결해야 할 난점인 것이다.

2) 裴茂基·朴德濟·唐尤鉉(1987.12).

標準生計費는 국민생활의 생계비실태조사를 통해 가계지출의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추출하여 이 표준적인 근로자세대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이다. 이때 「標準」이라는 말에는 이론적으로 바람직스럽다는 가치판단은 전혀 개재되고 있지 않음이 유의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부가 택한 표준생계비 산정방식을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I. 標準生計費의 算定方法

標準生計費 算出方式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³⁾

- 1) 1987년 3월의 都市家計調查를 통해 가구주만 취업하고 있는 가구 예컨대 가구주 1인만 취업하고 있는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그리고 5인가구를 선정하여 이를 標準家口로 삼는다. 표준가구는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다. 일본의 경우는 3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조사자료를 이용한다.
- 2) 표준가구의 家口人員別로 生計費總支出의 분포도를 구한다. 그 결과는 보통 왼쪽으로(skewed to the left) 치우친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 때 표준가구 각 家計支出의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은 평균값계층, 최빈값계층, 中位값계층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인사원과 우리나라의 노동부에서는 최빈값계층의 가계지출이 근로자세대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라고 가정한다. 왜 최빈값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消費支出의 平均값은 소수의 고액지출가계의 지출패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消費支出面에서 가장 빈번히 관찰된 값을 갖는 계층 즉, 최빈값계층이 생활실감에 부합되는 계층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2인가구 최빈값계층, 3인가구 최빈값계층, 4인가구 최빈값계층, 5인가구 최빈값계층을 都市家計調查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수별 로그 소비지출의 분포를 구해 최빈치 $\pm \frac{1}{2} \times \log[(\text{소비지출})\text{의 표준편차}]$ 의 구간에 포함되는 표본을 최빈값 계층으로 설정한다.

- 3) 家口員數別 최빈값계층이 찾아진 후, 각 품목(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괴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 교통·통신, 기타)별 消費支出을 家口員數의 函數로 놓는다. 여기서 괴복비(신발 포함)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수를 독립변수 X 라 하자. 이때 X 의 값은 2인, 3인, 4인, 5인이다. 각 가구원수에 대응하는 최빈값계층의 괴복비지출을 종속변수 Y 로 표시

3) 우리나라 표준생계비에 관한 주요문헌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張鉉俊(1987. 12), 最低賃金審議委員會(1987.9, 1988.7).

할 때,

$$Y_i = \alpha X_i^2 + \beta X_i + \varepsilon_i \quad (1)$$

라는 관계를 설정한다. 이때 ε 는 모든 古典的 假定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하자.

식 (1)은 2차방정식인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절편이 없다. 왜냐하면 가구원수 X 가 零(0)이면 당연히 소비지출의 기대값 $E[Y]$ 는 零(0)이 되기 때문이다. ii) α 가 負(-)의 값을 갖고 β 가 正(+)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각 가구의 消費支出은 증가하되 그 증가하는 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만약 α 가 正의 값을 갖고 β 가 負의 값을 갖는다면 이는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은 증가하되 그 증가하는 속도는 채증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4) 각 가구원수에 대응하는 최빈값계층의 평균소비지출액을 Y_i 로 놓고 X_i 의 값이 2, 3, 4, 5인일 때, 2인가구의 최빈값계층의 평균소비지출액을 \bar{Y}_2 라고 하고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의 그것들을 $\bar{Y}_3, \bar{Y}_4, \bar{Y}_5$ 라고 하면, 86년과 87년의 최빈값계층의 평균적 소비지출(품목별)은 〈表 1〉에 나와 있다. 그리고 식 (1)에서 설정한 2차식의 계수 α 와 β 의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추정치를 각각 a 와 b 라고 했을 때 그 값은 〈表 2〉에 나와 있다.

5) 추정된 계수 a 와 b 를 이용하면 각 品目別 家口人員別 消費支出豫測値(\hat{Y}_i)는 다음과 같다.

$$\hat{Y}_i = aX_i^2 + bX_i \quad (2)$$

각 품목별 가구인원별 소비지출예측값은 〈表 3〉에 정리되어 있다. 식(2)를 이용

〈表 1〉 最頻階層의 平均消費支出

	1986. 3				1987. 3			
	2 인	3 인	4 인	5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식료품	58,802	66,966	87,108	96,368	65,557	80,022	93,595	105,724
주거	46,033	7,761	63,034	63,724	55,432	58,964	68,967	86,768
광열·수도	13,788	15,594	20,132	20,734	16,141	19,603	23,032	25,504
가구·집기	5,676	6,856	8,938	7,887	6,161	9,420	10,454	10,838
피복·신발	11,702	9,826	14,385	17,125	9,582	11,501	18,505	18,140
보건·의료	5,106	10,487	12,464	12,396	9,665	14,391	17,827	17,489
교육·교양	8,314	9,834	18,769	32,682	10,303	11,476	27,140	43,117
교통·통신	12,924	11,179	13,479	15,511	16,202	14,082	14,545	19,159
기타	18,251	23,770	23,770	25,838	28,108	33,221	33,989	37,102
소비지출 計	180,600	202,277	268,268	292,267	212,808	249,353	305,666	362,492

資料：張鉉俊，(1987.12, p.17)，最低賃金審議委員會(1987.9, 1988.7)

〈表 2〉 品目別 最頻값과 家口員數間의 回歸式의 推定된 係數

	1986. 3			1987. 3		
	a	b	R ²	a	b	R ²
식료품	-2,644	33,410	0.88	-2,721	34,782	0.89
주거	-2,539	26,328	0.78	-1,176	23,061	0.78
광열·수도	-778	8,308	0.72	-636	8,407	0.73
가구·집기	-428	3,951	0.27	-15	2,758	0.20
피복·신발	-262	4,801	0.46	-367	5,636	0.44
보건·의료	-460	5,057	0.33	-238	5,296	0.28
교육·교양	1,351	-302	0.40	1,556	350	0.44
교통·통신	-674	6,341	0.55	-576	6,435	0.58
기타	-1,561	13,756	0.57	-1,243	14,059	0.61

資料：張鉉俊(1987.12, p.15), 最低賃金審議委員會(1988.7, p.16)

하여, 우리는 우리나라 都市家計調查에서 조사되지 않는 1인가구에 대한 생계비(즉 $X_i=1$ 일 때 $\hat{Y}_i=a+b$ 이며 이것이 1인가구의 생계비가 된다)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6) 品目別 家口人員別 최빈값의 예측값을 同年 同月의 1인취업 4인가구의 平均支出額으로 나누면 生計費換算乘數가 계산된다. 즉, 환산승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환산승수} = \frac{\text{품목별 가구인원별 최빈값의 예측치}}{\text{1인취업 4인가구의 품목별 평균지출액}} \quad (3)$$

〈表 3〉에는 각년도의 품목별 가구인원별 최빈값의 예측값과 우측끝에 4인가구 전체의 각 품목별 평균지출값이 실려져 있다. 예컨대 1987년 피복비의 경우 1,2,3,4, 5인 가구의 최빈값의 예측값 5,269, 9,805, 13,605, 16,572, 19,005원을 1인취업 4인가구 전체의 피복비 평균지출값 29,367원으로 각각 나누면 0.179, 0.333, 0.463, 0.567, 0.647의 값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1,2,3,4,5인 가구의 피복비환산승수가 된다. 동일한 방식을 식료품비, 주거비 등의 품목에 적용하여 계산된 換算乘數는 〈表 4〉에 나와 있다.

7) 87년 환산승수가 安定的이라고 가정하자. 88년 4인가구 평균지출액에 관해 수집된 정보에 87년 환산승수를 곱하면, 즉

$$\frac{\text{가구인원별 최빈값의 예측값}}{\text{87년 1인취업 4인가구 평균지출액}} \times \frac{88년 1인취업 4인가구의}{\text{평균지출액}} \quad (4)$$

이면, 88년 가구인원별로 품목별소비지출액이 예측될 것이다. 환산승수란 용어에는 88년 4인가구 평균지출액을 토대로 88년의 각 家口別 生計費를 환산하는 승수(multiplier)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表 3〉 品目別, 家口人員別 最頻값의 豫測값

1986. 3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1 인 취업 4 인 가구 전체 평균지출액
식료품	30,766	56,244	76,434	91,336	100,950	114,902
주거	23,784	42,500	56,133	64,688	68,165	104,762
광열·수도	7,530	13,504	17,922	20,784	22,090	26,658
가구·집기	3,423	6,190	8,001	8,956	9,055	19,616
피복·신발	4,539	8,554	12,045	15,012	17,455	25,466
보건·의료	4,597	8,274	11,031	12,868	13,785	28,600
교육·교양	1,049	4,800	11,253	20,408	32,265	44,169
교통·통신	5,667	9,986	12,957	14,580	14,855	19,853
기타	12,195	21,268	27,219	30,048	29,755	54,738
소비지출 계	93,550	171,320	232,995	278,680	308,375	438,764

1987. 3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1 인 취업 4 인 가구 전체 평균지출액
식료품	32,061	58,680	79,854	95,592	105,885	119,128
주거	21,886	41,418	58,599	73,428	85,905	110,385
광열·수도	7,771	14,270	19,497	23,452	26,135	28,467
가구·집기	2,743	5,456	8,139	10,792	13,415	23,694
피복·신발	5,269	9,805	13,605	16,572	19,005	29,367
보건·의료	5,058	9,640	13,746	17,376	20,530	29,632
교육·교양	1,906	6,924	15,054	26,296	40,650	56,291
교통·통신	5,859	10,566	14,121	16,524	17,775	21,234
기타	12,816	23,146	30,990	36,348	39,220	59,613
소비지출 계	95,369	179,905	253,605	316,380	368,520	477,811

資料 : 1986. 3월의 통계는 〈表 2〉에 의거 작성.

1987. 3월의 통계는 最低賃金審議委員會 (1988.7, p.17).

우리나라에서는 88년 1인취업 4인가구의 平均消費支出額을 1988년 3월의 경제기
회원 도시가계조사테이프에서 직접 구하지 않고, 이를 統計的으로 처리하여 각 가
구별로 품목별 예상지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88년 3월의 도시가계조사
에서 1인 취업한 2~6인의 家口全標本을 대상으로 品目別로 각 가구의 지출액을 C_i
로 표시하고 각 가구원수를 X_i 라고 표시했을 때

$$C_i = \gamma X_i^2 + \delta X_i + \varepsilon_i \quad (5)$$

〈表 4〉 品目別 家口員數別 換算乘數

	1986년 환산승수					1987년 환산승수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식료품	0.268	0.489	0.665	0.795	0.876	0.269	0.492	0.670	0.802	0.888
주거	0.227	0.406	0.536	0.617	0.651	0.198	0.375	0.530	0.665	0.778
광열·수도	0.282	0.507	0.672	0.780	0.829	0.272	0.501	0.684	0.823	0.918
가구·집기	0.180	0.316	0.408	0.457	0.462	0.115	0.230	0.343	0.455	0.566
피복·신발	0.178	0.336	0.473	0.589	0.685	0.179	0.333	0.463	0.567	0.647
보건·의료	0.161	0.289	0.386	0.450	0.482	0.170	0.325	0.463	0.586	0.692
교육·교양	0.024	0.109	0.255	0.462	0.730	0.033	0.123	0.267	0.467	0.722
교통·통신	0.285	0.503	0.653	0.734	0.748	0.275	0.497	0.665	0.778	0.837
기타	0.223	0.389	0.498	0.549	0.544	0.214	0.388	0.519	0.609	0.657

資料 : 1986년 환산승수는 〈表 3〉에 의거 작성.

1987년 환산승수는 最低賃金審議委員會 (1988.7, p.18).

라는 관계식을 설정, 이 식을 최소자승법에 의해 추정한다. 추정된 식은 $\hat{C}_i = \hat{\gamma}X_i^2 + \hat{\delta}X_i$ 이라고 표시되며, 4인 가구의豫想支出額을 \hat{C}_4 라고 하자. 1988년 3월 1인 취업 2~6인 가구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 평균가구원수는 3.85인이며, 품목별 2~6인 가구의 평균지출액(1인 취업 가구표본에서)을 C_m 이라고 할 때 $X=3.85$ 인 일 때의 예상지출액은 $\hat{C}_{3.85}$ 이며, 4인 가구 品目別 平均支出推定額은

$$\frac{\hat{C}_4}{\hat{C}_{3.85}} \times C_m \quad (6)$$

으로 계산된다. 이것은 〈表 5〉에 나와 있다.

〈表 5〉에서 1987년의 4인 가구 품목별 평균지출추정액은 1987년 3월 가계조사에서 1인 취업 2~6인 가구에서 평균가구원수가 3.78인 이었으므로

$$\frac{\hat{C}_4(1987\text{년})}{\hat{C}_{3.78}(1987\text{년})} \times C_m(1987\text{년})$$

으로 계산된다.⁴⁾

이렇게 계산된 88년의 4인 가구 品目別 平均支出額에 87년 換算乘數를 곱하면(또는 87년의 4인 가구 품목별 평균지출액에 86년 환산승수를 곱하면) 品目別 家口員數別 生計費豫測欲이 산정될 것이다. 〈表 7〉에 각 품목의 가구원수별 생계비예측값이 나와 있는데 특히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독신 가구의 品目別 生計費가 상기의 방법에 의해 계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4) 張鉉俊 박사(1987.12)는 식(5)에서 $\hat{\gamma}$ 와 $\hat{\delta}$ 를 추정하여 $X=4$ 일 때 $Y=1$ 로 계수 $\hat{\gamma}$ 와 $\hat{\delta}$ 를 조정한 후 이 조정된 계수를 이용 $X=3.78$ 일 때의 \hat{C} 의 값을 구하고, 이 값의 역수를 $C_m(1987\text{년})$ 에 곱하는 2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의 방법은 보다 간단할 것이다.

〈表 5〉 4人家口 品目別 平均支出推定額

	1987년 4인가구지출추정			1988년 4인가구지출추정		
	1987. 3의 평균값 (87년의 C_m)	$\frac{\hat{C}_4}{\hat{C}_{3.78}}$	$((88년의 C_m) \times \frac{\hat{C}_4}{\hat{C}_{3.78}})$	1988. 3의 평균값 (88년의 C_m)	$\frac{\hat{C}_4}{\hat{C}_{3.85}}$	$((88년의 C_m) \times \frac{\hat{C}_4}{\hat{C}_{3.85}})$
식료품비	111,885	1.0367	115,999	130,256	1.0256	133,594
주거	102,112	1.0389	106,090	111,569	1.0298	114,900
광열·수도	26,192	1.0349	27,107	28,703	1.0289	29,533
가구·침기	21,729	0.9765	21,220	17,461	1.0300	17,987
피복·신발	25,112	1.0508	26,388	28,546	1.0315	29,448
보건·의료	28,969	1.0169	29,460	32,320	1.0154	32,830
교육·교양	44,536	1.1310	50,372	56,639	1.0488	59,400
교통·통신	21,318	1.0205	21,755	38,218	1.0345	39,540
기타	60,074	1.0247	61,561	65,614	1.0232	67,139

資料：張鉉俊(1987. 12, p. 30), 最低賃金審議委員會(1988. 7, p. 20).

상기자료들은 이 논문에서와는 약간 다른 방법 즉 脚註4에 설명된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8) 식료품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기로 한다. 식료품비는 實態生計費에 의거하지 않고 理論生計費에 의거한다. 구체적으로 단신근로자(18세 남자)에 권장되는 하루 영양섭취량을 1988년 2,726.7 Kcal(1987년은 2,729.6 Kcal)로 하고 이와 관련된 식품품목과 수량을 마켓·바스켓으로 정한 후, 각년도 3월의 全都市消費者物價(경제기획원 물가조사와 종합물가정보)에 의거하여 각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1일 식료품비가 계산된다. 1988년의 월식료품비는 1일 식료품비를 $\frac{365}{12}$ 배(1987년에는 1일 식품비를 30배)한 것이다. 〈表 6〉에는 1일 식료품비와 월식료품비가 나와 있다.

1인 단신가구의 식료품비가 마켓·바스켓 방식으로 구해진 후 2~5인 가구의 식료품비지출은 〈表 3〉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表 3〉에 의하면 1987년 3월의 경우 2인, 3인, 4인, 5인의 식료품비는 각각 1인가구의 1.8302, 2.4906, 2.9815, 3.3026배이므로, 1인가구의 理論的 生計費가 1988년 3월 기준으로 52,992원일 때 2인가구의 식품비는 $52,992 \times 1.8302$, 3인가구의 식품비는 $52,992 \times 2.4906$, 4인가구와 5인가구의 식품비는 $52,992 \times 2.9815$, $52,992 \times 3.3026$ 으로 구해진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에는 〈表 3〉에 나타난 家口別 支出構造가 안정적이라고 가정되고 있는 것이다. 〈表 3〉에 나타난 품목별 가구인원별 최빈값의 예측값을 4인가구 품목별 전체 평균지출액으로 나누면 환산승수가 구해짐을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고 환산승수가 안정적이라고 이미 가정한 바가 있는데, 換算乘數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다름아니라 〈表 4〉

〈表 6〉 食料品의 마켓·바스켓과 日 및 月 食料品費의 推定

식 품 군	식 품 군 류	식 품	1987년 2,729.6Kcal기준		1988년 2,726.7Kcal기준	
			중량(g)	가격	중량(g)	가격
단백질 식품	육 류	쇠고기	5	29	5	31
		돼지고기	15	48	15	38
		닭고기	10	17	10	17
	어 류	명태	15	14	15	19
		고등어	10	10	10	12
		칼치	10	30	10	32
		이면수	5	8	5	18
		물오징어	10	21	5	16
	콩 류	깻	•	•	5	15
		두부	70	32	70	36
		된장	30	21	15	11
		대두	•	•	15	17
	알 류	단걀	50	45	50	47
소 계			230	275	230	309
칼슘 식품	우유 및 유제품	우유	180	140	180	140
	뼈째먹는 생선	멸치	10	62	10	74
소 계			190	202	190	214
무기질 및 비타민식품	채소류	무	60	4	70	17
		우추	80	13	120	41
		양배추	15	2	20	11
		파	20	4	20	23
		양파	20	9	20	9
		마늘	10	21	5	13
		오이	15	11	20	15
		호박	15	7	15	4
		시금치	15	8	15	18
		당근	15	8	20	13
		상처	15	5	15	18
		콩나물	25	13	30	17
		고추	15	17	5	27
		미역	15	8	20	5
		김	5	15	5	10
		양송이	10	14	•	•
	과실류	사과	25	33	30	78
		배	10	13	5	21
		감	5	5	5	6

식 품 군	식 품 군 류	식 품	1987년 2,729.6 Kcal기준		1988년 2,726.7 Kcal기준		
			중량(g)	가격	중량(g)	가격	
무기질 및 비타민식품	과 실 류	수 박	5	14	10	26	
		참 와	5	15	10	6	
		글	15	11	10	43	
		딸 기	5	4	5	8	
		포 도	10	14	10	16	
		토 마 토	10	5	5	4	
		복 송 아	10	20	10	20	
소 계			450	293	500	469	
당질식품	곡 류	쌀	330	330	290	315	
		보리쌀	60	29	40	20	
		밀가루	10	3	30	9	
		국수	60	57	80	41	
		라면	30	24	40	32	
		식빵	20	15	30	21	
	감자류	감자	35	14	45	34	
		고구마	35	6	40	25	
소 계			580	478	595	497	
지방식품	유지류	식물성유	28	37	19	23	
		참기름	2	36	1	19	
	견과류	밤	·	·	5	19	
		콩	·	·	5	18	
소 계			30	73	30	79	
총 계				1,321		1,568	
기초식품, 외식비				147		174	
日 식료품비				1,468 ¹⁾		1,742 ¹⁾	
月 식료품비				44,033 ²⁾		52,992 ³⁾	

資料：張鉉俊(1987.12, pp.67-71).

最低賃金審議委員會(1988.7, pp.32-33).

註：1) 표준생계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기호식품 및 외식비의 비중을 10%로 정하고 순식품비의 비중을 90%로 하였음.

2) 1987년 월식품비=일식품비×30

3) 1988년 월식품비=일식품비× $\frac{365}{12}$

에 나타난 가구별 저출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

환산승수를 이용하여도 각 가구별 식료품비가 구해진다.

예컨대 2인가구의 식료품비는

$$\begin{aligned}
 & 1\text{인 가구 이론적 식료품비} \times \frac{2\text{인 식료품최빈값의 예측값}}{1\text{인 식료품최빈값의 예측값}} \\
 & = 1\text{인 가구 이론적 식료품비} \times \frac{2\text{인 식료품최빈값의 예측값}}{\frac{4\text{인 가구 전체의 식료품 평균지출액}}{1\text{인 식료품최빈값 예측값}}} \quad (7) \\
 & = 1\text{인 가구 이론적 식료품비} \times \frac{2\text{인 식료품환산승수}}{1\text{인 식료품환산승수}}
 \end{aligned}$$

라는 방식으로 마지막 식에서와 같이 환산승수를 이용하여도 구해질 수 있다.

9) 標準生計費는 이 단계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다. 소비지출의 최빈값계층의 생계비를 근로자세대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간주되어 식료품비에 관해서는 마켓·바스켓 방식에 의거하여 생계비를 산정한 것이 표준 생계비이다. 이때 「標準」은 家計支出의 標準이 된다는 의미이며, 표준이라고 판단되는 계층은 생계비지출실태에서 最頻階層이다.

〈그림 1〉에는 표준생계비 산출과정이 요약되어 있다. 前年의 3月分 도시가계조사의 최빈값계층의 소비지출을 이용하여 환산승수를 계산하여, 환산승수에 當年 3月分 도시가계조사에서 추정된 품목별 평균소비지출액과 마켓·바스켓 방식에 의한 식료품비를 투입하면 家口人員數別 標準生計費가 산출된다. 〈表 7〉에는 구체적으로 1)~8)의 순서에 의해 산정된 표준생계비가 나타나 있다.

10) 87년 표준생계비와 88년 표준생계비의 算定에는 약간의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음이 마지막으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환산승수의 계산방법에 관해서이다. 가구인원별 환산승수는 87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表 7〉 家口員數別 標準生計費

	1987년의 표준생계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소비지출	110,156	201,627	274,561	328,765	364,080
식료품	44,033	80,344	109,261	130,620	143,929
주거비	24,082	43,073	56,864	65,458	69,065
광열·수도	7,644	13,743	18,216	21,143	22,472
가구·침기	3,820	6,706	8,658	9,698	9,804
피복·신발	4,697	8,866	12,482	15,543	18,076
보건·의료	4,743	8,514	11,372	13,257	14,200
교육·교양	1,209	5,491	12,845	23,272	36,772
교통·통신	6,200	10,943	14,206	15,977	16,273
기타	13,728	23,947	30,657	33,797	33,489
소비지출 계	146,776	267,813	364,203	435,399	47,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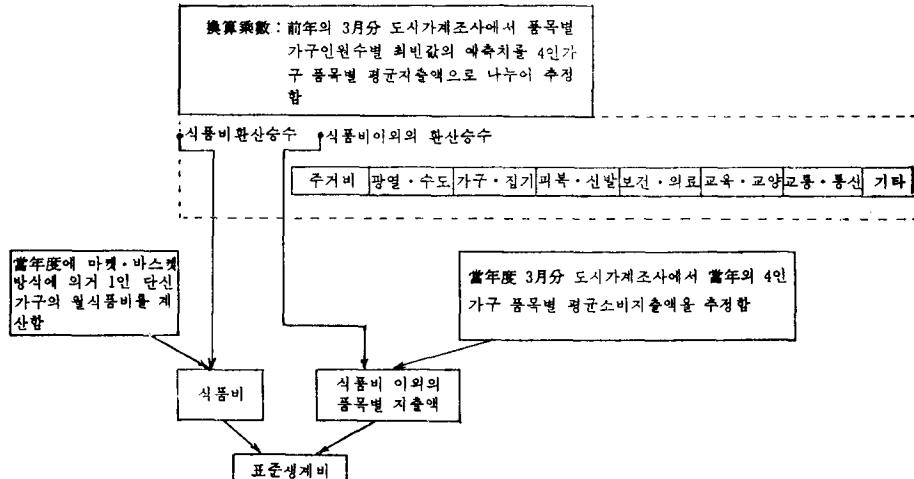
	1988년의 표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124,160	232,608	325,349	402,374	463,697
식료품	52,992	96,989	131,992	157,999	175,012
주거비	22,781	43,112	60,996	76,431	89,419
광열·수도	8,062	14,804	20,227	24,330	27,114
가구·집기	2,082	4,142	6,179	8,193	10,184
피복·신발	5,284	9,832	13,643	16,718	19,057
보건·의료	5,604	10,680	15,230	19,251	22,746
교육·교양	2,011	7,306	15,885	27,748	42,895
교통·통신	10,910	19,675	26,295	30,769	33,099
기타	14,434	26,068	34,902	40,935	44,171
소비지출 계	76,639	323,296	439,973	526,663	583,373

資料 : 1987년 통계는 <表 4>와 <表 5>에 의거 계산

1988년 통계는 最低賃金審議委員會 (1988.7, p.23).

가구인원별 換算乘數는 앞의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준가구에 대해 가구인원별로 최빈값계층의 費目別 支出예측값을 구해, 이것을 각각의 4인 가구의 費目別 평균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는데 87년에는 1인가구의 費目別 支出金額은 회귀식에 의해 예측된 1인가구의 최빈값의 예측값을 이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 즉 2~5인 가구의 費目別 支出金額은 2~5인 가구의 최빈값계층의 평균소비지출의 예측값 대신에 실제값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6)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日本人事院의 방식과 다른 것이며 필자의 제안에 따라 88년의 우리나라 표준생계비는 87년의 그것과는 달

<그림 1> 標準生計費의 產生過程



리 일본인사원의 방식을 따라 앞에 6)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IV. 標準生計費算定에 관한 몇 가지 問題點

표준생계비에 관한 평가는 算定方法에 관한 기술적인 것과 방법론 자체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算定方法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차례로 제기해 보도록 하자.

1) 88년 標準生計費計算을 위해 최빈값계층의 설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87년 3월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87년 1년간의 전체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7년 3월 자료에서 품목별 seasonal variation이 있는 일부품목(특히 광열비, 교육비 등) 등은 과다하게 책정되고 이것은 환산승수를 통하여 전체생계비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換算乘數의 安定性이 표준생계비산출에 기본적 중요성을 지니므로 우리나라도 표준생계비계산을 위한 최빈값계층의 設定期 전년도의 1년간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2) 88년 표준생계비계산에 있어서 品目別豫想支出額을 Ⅲ-7)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식 (6)을 이용 추정하는데 이때 2~6인 가구 全標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품목별 가구인원별 최빈값의 예측값은 2~5인 가구를 이용하고 品目別 家口人員別豫想支出額은 2~6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하다.

3) 품목별 최빈값계층의 消費支出과 가구인원수간의 점상관도(scatter diagram)을 살펴 보았을 때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 등에 식(1)과 같은 2차식 모형을 설정하기 힘들다는 점이 나타난다. 이 경우 2차식으로 추정할 경우 1인가구의 품목별 지출예상액은 낮게 추정되게 되는 傾向을 지닌다.

4) <表 6>에 나타난 87년, 88년의 식품의 마켓·바스켓을 비교하면 수량이 감소한 품목이 12가지이며 수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이 첨가된 품목이 20가지이다. 이러한 품목의 변화는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관한 명백한 설명이 결여되고 있다. 식품의 마켓·바스켓을 일정기간 유지하되, 바꾼다면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이제 방법론 자체에 대한 평가인 標準生計費의 標準性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張鉉俊박사(1987)는 일본의 生計費換算乘數와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고 “4인기준으로 보아 일본의 수치가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表 8〉 日本의 費目別, 世帶人員別 生計費換算乘數(1986년 4월)

1) 全 國

費 目	世帶人員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食 料 費	0.307	0.538	0.744	0.908	1.029
住 居 關 係 費	0.453	0.751	0.894	0.940	0.958
衣 服・履 物 費	0.252	0.449	0.590	0.674	0.703
雜 費 I	0.181	0.347	0.497	0.630	0.748
雜 費 II	0.249	0.448	0.569	0.621	0.604

2) 東 京

費 目	世帶人員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食 料 費	0.315	0.557	0.757	0.903	0.996
住 居 關 係 費	0.387	0.656	0.806	0.847	0.857
衣 服・履 物 費	0.216	0.396	0.539	0.646	0.717
雜 費 I	0.167	0.329	0.485	0.635	0.778
雜 費 II	0.257	0.456	0.566	0.597	0.548

資料 : 인사원월보, 1986.9, p.61.

는 우리나라의 平均과 最頻值가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다는 것을 말하며 所得分布의 不平等度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1986년의 일본의 품목(식료품비, 주거관계비, 교복비(신발포함), 보건의료, 교통통신, 교육, 교양오락으로 구성되는 잡비 I, 그 외의 소비지출인 잡비 II)별 환산승수(〈表 8〉 참조)를 보면 4인가구 평균값과 4인가구 최빈값이 식료비와 주거관계비에 있어서는 대단히 근접하고 있고 그 외의 품목에서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환산승수의 값이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산승수의 값이 낮다는 것은 예컨대 4인가구 消費支出의 分布度를 살펴보면 산술평균과 최빈값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는 소득분포가 지나치게 左쪽으로 치우친 (skewed to the left) 모양을 갖는 것의 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한국처럼 所得不平等度가 심한 나라에서는 최빈값계층의 實態生計費를 기초로 산정한 생계비를 근로자세대의 표준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준생계비의 표준성문제에 대해, 代案으로써 中位값계층의 실태생계비를 앞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統計的으로 처리하여 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은 필자에 의해 제시되었고 88년의 경우에는 中位값계층의 실태생계비에 기초한 환산승수를 계산하고 換算乘數 및 4인가구 品目別平均支出推定額을 이용한 생계비가 算定되었다.(〈表 9〉 참조).

中位값계층의 實態生計費를 토대로 한 생계비의 산출은 18세 단신남자의 생계비

〈表 9〉 中位값階層을 基準으로 한 「標準」生計費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145,038	271,652	381,194	472,268	557,357
식료비	52,992	97,378	133,159	160,331	178,899
주거비	29,405	55,342	77,812	96,812	124,409
광열·수도	9,537	17,261	23,171	27,268	29,552
가구집기	3,414	5,926	8,889	10,950	12,560
의복·신발	6,767	12,755	17,965	22,357	26,052
보건·의료	6,359	12,635	18,826	24,933	30,955
교육·교양	3,899	11,483	22,752	37,706	56,344
교통·통신	12,988	23,485	31,490	37,004	40,026
기타	19,677	35,387	47,130	54,907	58,560

資料：最低賃金審議委員會 (1988.7, p.42).

가 145,038원으로 극히 우연하게도 금년도 최저임금 14만 4천원과 대단히 유사함이 관찰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정치적 결정이나 이해당사자들의 홍정과 타협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보다 이제부터 中位값계층의 생계비라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労使政이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6) 中位값계층을 기준으로 한 「標準」生計費의 견실한 성격은 최저임금심의회의에서 행한 「근로자 생계비 조사결과보고」⁵⁾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거형태별로 볼 때 月貲의 경우 식료품이 56,747원, 주거비 27,960원, 광열·수도 9,149원, 가구·집기 5,868원, 보건·의료 5,172원, 교통·통신 12,365원으로 〈表 9〉의 1인 생계비와 대단히 근접하고 있고 다만, 피복·신발이 20,340원, 교육·교양이 17,956원, 기타 소비지출이 29,806원으로 이 세 품목에 있어서는 〈表 9〉의 1인 생계비와 다르다.

V. 맷 음 말

일본의 標準生計費에서 기본적 사고방법은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收入과 支出의 양 측면에서 민간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무원에게 민간급여와 맞는 수준 및 일반국민과 맞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保障한다는 것이다. 일본인사원은 1948년 제1회 공무원 급여권고 이래 생계비를 산정하여 공무원 급여결정상 중요한

5) 最低賃金審議委員會 事務局(1988.6, p.25)의 이 자료는 전국의 미혼단신근로자 2,000명에 대해 1988.3.1~3.31기간동안 가계부 작성률을 의뢰하여 自計式으로 작성된 것이다. 가계부작성이 된 1,837명 중 자가 312명, 전세 628명, 보증부월세 171명, 월세 83명, 월세 242명, 기숙사 339명, 기타가 62명이다.

지표로서 사용하여 왔다. 특히 동경에 있는 독신 남자의 標準生計費를 고졸채용자의 초임으로 하여 생계비와 급여를 밀접히 결부시켜 왔다. 2차대전 직후의 시기에서는 표준생계비는 근로자 생활의 最低保障線으로서의 인식이 강하였고 사실 그 당시의 생활수준은 최빈치계층과 최저생활선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경향은 1945년에서 65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65년 이후에서는 國民生活水準이 향상하여 최빈계층은 최저생활수준에서 독립된 標準水準의 생활을 나타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생계비를 18세의 단신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最低賃金의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2~5인의 표준생계비는 일반근로자의 급여결정기준자료로 전혀 활용되지 않고 死藏되고 있다. 1인의 표준생계비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삼을 때에 있어서도 국민의 실생활상에서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최저임금제가 지향하는가 아니면 최저생활수준에서 獨立된 標準水準의 생활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이 주된 논쟁점이 된다. 만약에 전자가 政策目標로 지향하는 바라면 최빈값계층의 실태생계비에 기초한 표준생계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미를 지니며 만약에 후자가 정책목표로 지향하는 바라면 중위값계층의 實態生計費를 기초로 한 「標準」生計費가 보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裴茂基・朴德濟・曹尤鉉, 「最低賃金 適用對象 都市勤勞者 最低生計費 算出模型開發研究」, 서울대 經濟研究所, 1987. 12.
2. 張鉉俊, 「韓國都市部門의 標準生計費」, 1987. 12.
3. 最低賃金審議委員會, 「勤勞者의 標準生計費」, 1987. 9., 1988. 7.